아름다운 생복한 사 입

제2019-168호 2019년 9월 6(금)





보

시정지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0 여수시 공고	제2019-2173호	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, 주지장시업 시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	3
0 여수시 공고	제2019-2178호	작권말소 대상어선 최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사송달 공고	9
0 여수시 공고	제2019-2183호	야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	11
0 여수시 공고	제2019-2190호	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자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	21
0 여수시 공고	제2019-2192호	도로지정공고[미평동 158번지]	30

회				
람				

여수시 공고 제2019-2173호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9. 6

여 수 시 장

1. 사업의 개요

ㅇ 사업기간(예정) : 2019. 9. ~ 2020. 12. 31.

사업의 종류 및 명칭(사업명)	사업예정지(위치)	사업내용	사업시행자의 명칭 (성명) 및 주소
여수 도시계획시설 (도로, 주차장: 신기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)	전남 여수시 신기동 112-1번지 일원	○면적 및 규모: 1,919㎡ (도로 285.7, 주차장 1,633.3)	여수시장/ 여수시 시청로 1

2. 공람장소, 공람기간

사업명	열람장소	열람기간
신기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	여수시 교통과	2019. 9. 6. ~2019. 9. 20.(14일간)

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: 2019. 9. 6.~2019. 9. 20.(14일간) ※초일미산입
- 제출방법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

4. 토지 및 지장물조서: 붙임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(☎061-659-41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편입토지조서

	토지:	소 재 지			지 적(m²)		소 유 지	+		이 해 곤	· 계 인	Ы
연번	위치	번 지	지목	·총	편입민 주자장	년적 도로	주 소	성 명	권리의 종류	성 명	주 소	고
1	신기동	112-1	차	782.6	755.5	27.1		여수시				
2	신기동	151	도	2750.7	39.6			여수시				
3	신기동	152	노	3887.1	158.0			여수시				
4	신기동	113-15	차	444.7	444.7			여수시				
5	신기동	113-14	대	228.5	228.5		여수시 웅천동 6**	문**	근저당권	여천농업 협동조합	여수시 학동 42	
6	신기동	112-3	대	199.8		115.0	여수시 신기남1길 2*-* (신기동)	김**	근저당권	여수중부 새마을금 고	여수시 충무로27-2(교동)	
7	신기동	112-14	대	194.0	7.0	143.6	여수시 봉계동 7**	민** 구**				
계		7필지		8,487.4	1,633.3	285.7.0						

○ 지장물조서

	소	재지	B7101	7.5.01		소	유 자		이해관계인	<u> </u>	
번	위 치	번 지	물건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(m²)	성명	주소	권리의	성명	주소	비 고
	시_	<u> </u>	1층점포	철근콘크	113.16			종류			
			1 층주 택	리트 조립식판	23.1						
			1층	넬							
			비가림시설	판넬조 겨라처고	16.8						
			2층주택	경량철골 및 벽돌조	84.25						
			2층 보일러실	조립식판 넬	10.8						
			정화조		1식						
			2층가추	아크릴	3식						
			2층 비가림시설	아크릴	1식						
	신		2층 난간시설	스덴	1식		여수시			여수시	
1	기	112 -3	2층계단	대리석20 단	1식	김**	신기남1길	근저 당권	여수중부 새마 을금 고	충무로	
	씽		바닥	타일포함 콘크리트 17×1.8, 2.1×4.7	2식		2*-*(신기동)			27-2(교동)	
			담장 우편함	타일포함 벽돌높이 1.5×17	1식 1식						
			영업보상	쏠로아떼	2식						
			간판 에[어콘및 시설(주택 포함)		4식 3식						
			수도		2식						
	신		영업보상	스킨 케어차옴	1식					여수시	
2	기	112 -3	간판	" ' ' ' ' ' '	5식			임차인	남**	신기남1길	
	동	-5	에어콘 및 시설		1식					2*-*(신기동)	
			1층점포	철근 콘 크 리트	107.9						
			1층점포	철근콘크 리트	18.86						
			1층화장실	<u> </u>	1.8						
			2층주택	 벽 돌슬 래 브	82.91		ויאנא				
3	신 기	112	2층주택	<u></u> 벽돌슬래 브	24.85	민**	여수시 신기남 1 길				
	- ド	-14	2층보일러 실 및 창고	프 조립식판 넬	10.56	구**	3*-1* (신기동)				
			대문	르 스덴목조 포함슬래 브	1식						
			정화조		1식						
			초인종 및 우편함	콘크리트 3단	1식						

	소7	대지	8710 1	770		소	인						
번	위	번	물건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(㎡)	성명	유 자 주소	권리의	성명	주소	· 비 고		
	치	지	011	대리석			·	종류		·	_		
			1층계단	스덴난간 포함16단	1식								
			2층계단	콘크리트 스덴난간 포함17단	1식								
			1층수도관		1식								
			및 시설 1층화단	7.5×1	1식								
			1층계단		1식								
			및 창고	콘크리트									
			바닥	(16.6×3), (8.7×1)	2식								
			에어콘 실외기		2식								
			담장	벽돌 및 판넬조 (14~높0 2), 벽돌 (9~높이1.5)	2식								
			2층비가림 시설	판넬조	1식								
			2층주택 베란다시설	경량 철골조	1식								
			옥상 빨래건조대	철재	3식								
	신	112	영업보상 간판	효정혜어	1식 3식					여수시			
4	기 동	-14	에어콘 실외기		1식			임차인	김**	신기남1길 3*-1*(신기동)			
5	신 기 동	113 -14	동산이전비	웅비 참살이	1식			임차인	문**	여수시 신기남1길 2*-1*(신기동)			
6	신 기 동	112 -14	영업보상 간판 에어콘 실외기	로이스	1식 1식 2식			임차인	0 **	여수시 신기남1길 3*-1*(신기동)			
			1층 점포	철근콘크 리트	133.65			전세권 설정	한**	여수시소라면 달천1길2*-*			
			1층 창고	판넬조	15.2								
			1층 창고	스레트 및 썬라이트	28.9		여수시						
7	신 기	113	1층 화장실	조립식 판넬	3.08	문**	신기남1길	771	서치노이	ابكات			
	ド	-14	1층 화장실	벽돌 슬래브	4.94		2*-1* (신기동)	근저 당권	여천농업 협동조함	여수시 학동 42			
			2층 주택	벽돌 슬래브	133.65								
			2층 주택	경량 철골조	13.6								

	소기	대지	8710 1	7.7.01		소	유 자		이해관계임	인	
번	위 치	번 지	물건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(^{m²})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	성명	주소	· 비 고
				철재							
			대문	구조믈	1식						
				포함							
			정화조		1식						
			1층 계단	대리석 18단	1식						
			2층 계단	콘크리트 17단	1식						
			 2층 통로	콘크리트	1식						
			장독대	콘크리트	1식						
			에어콘								
			실외기		1식						
			화단		1식						
			오디/관목		2주/3주						
			서								
			빨래건조대		5식						
			물탱크	FRP	1식						
				콘크리트							
			바닥	(19×1.7,	3식						
				17×1.5,7	97						
				.6×2)							
				벽돌							
			담장	(19×높이	1식						
				1.7)							

의 견 서

사업명	신기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								
사업장 위치	여수시 신기동 112-1번지 일원								
사업자	전라남도 여수시장								
의견제출자	성명	생년월일							
의선세출사	주소	전화번호							
제출의견									
기 타									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9년월일제출자(서명 또는 인)

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

공 시 송 달 공 고

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·신고·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 소유자에게 어선 직권말소 최고 및 저당권자,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지서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6일

여 수 시 장

- 1. 제 목: 허가.면허 효력상실 어선 직권말소 최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
- 2. 공고대상 : 5명(어선소유자 및 채권자 이해관계인)
- 3. 공고기간 : 2019. 9. 6 ~ 9. 2014일간)
- 4. 공고내역 : 붙임참조
- 5. 안내사항 : 기간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6. 문의사항 : 여수시청 수산경영과(☎ 061-659-3917)

허가.면허효력상실어선직권말소최고사전통지반송공시송달공고대상(어선소유자)

연번	연도	- 시군 명	최신주소	성명	선적 항	어선번호	어선 명	진수 날짜	동력 /무 동력	재질	엔진형 식	마력 수	추진 기형 식	톤수	길이	넓이	깊이	면허허가 효력상실내역	반송 여부	비고
1	201 9	년 여수 시	전라남도 화*면 고내*길 1*	김* 길	여수 시 고내 항	9411016-64675 **	제6 광명 호	19750 601	동력	목	육상차 량용디 젤	49	나선 일체 식	0.84	6.44	1.76	0.63	어업변경(허가 대체)후 1년경과	반송	
2	201 9	역수 시	전라남도여수시돌*읍군내리1**4-3번지*통5반	바 *명	여수 시 경 항	9502549-64682 **	광동	19910 803	동력	FRP	육상차 량용디 젤	150	나선 일체 식	2.45	7.76	3.06	0.77	연안복합2002- 710 2007.06.11효력 상실	반송	
3	201 9	년 여수 시	전라남도 여수시 돌*읍 돌*로 6*4-*	한*동	여수 시 화산 항	9610196-64675 **	동성 호	19870 601	동력	목	육상경 운기용 디젤	8	나선 일체 식	0.71	6.2	1.78	0.47	어업변경(허가 대체/후 1년경과	반송	
4	201 9	니 여수 시	여수시 수정동 335-1	여수 지하양산 청	율촌면	9612444-64675 **	기윤 호	19870 715	동력	FRP	가솔린 선외기	55	나선 일체 식	0.47	6.15	1.7	0.43	확인불가	반송	
5	201 9	. 여수 시	여수시 양지6길 * 20*동 140*호	강* 동	여수 시 화정 면	9801016-64675 **	제비 2호	19890 601	동력	FRP	육상차 량용디 젤	10	나선 일체 식	0.72	6.34	1.8	0.57	연안자망1998- 61 2003.02.10효력 상실	반송	

공 고

「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6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시행으로 빈집정비에 관한 제 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상위규정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과 사업 확대를 위하여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빈집 정의 명확화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체계의 구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, 제4조)
-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지원(안 제6조, 제7조)
- 지도 : 감독에 관한 사항 등(안 제8조, 제9조)
- 3. **개정 조례안** : 별첨
- **4. 입법 예고기간 :** '19. 9. 6. ~ '19. 9. 26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허가민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 - 가)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, 여수시장(허가민원과장)
 - 나) 전 화: 061)659-4029, 팩스: 061)659-5836
 - 다) 이메일(E-Mail) : youoa12@korea.kr
- 나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- 붙임 1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
 - 2. 「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」 개정 계획 1부

[붙임 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	례명 :	「여수시	빈집	정비	지원	조례」	전부개정	계획
-----	------	------	----	----	----	-----	------	----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그게이 취무면 네 ()	찬성	여부	0174/11 01	기타 참고사항		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반대	의견(사유)	714 44718		

[붙임 2]

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 안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빈집"이란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.
 - 2. "빈집정비사업"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 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추진상황
 - 2. 빈집 실태,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빈집정비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의 시급성, 우선순위, 각종 계획과의 상호연계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6조(빈집정비사업 시행)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

- 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
 - 2.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(공용 주차장, 쉼터, 운동시설, 공용텃밭,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)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
 - 3.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
 - 2.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- 3. 민원발생 및 위해발생 대비 시급한 경우
 - 4.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효과가 큰 경우
 -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 -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기준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목적을 위반할 경우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준용)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·절차·시기, 사용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한 빈집 정비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혅 했

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

험, 환경오염, 미관저해 등 주거환 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 제3조(지원체계 구축 등) ① 시장 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아무도 거 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정비(이하 "빈집 정비"라 한다) 등 쾌적한 주 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 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

개 정 아

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사고 위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 안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 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> 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빈집"이란 여수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이 거주 또는 사용 여 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 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 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.
- 2. "빈집정비사업"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 다.

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>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.

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빈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빈집정 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지원 금액,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빈집 정비 지원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 ·시행하여야 하며,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효율적으로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 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정비대상) 빈집 정비의 대상 은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 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(이하 "정비대상"이 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

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.

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 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 야 하며,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 여야 하다.

- 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추진상황
- 2. 빈집 실태,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빈집정비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의 시급성, 우선순위, 각종 계획과의 상호연계 방안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.

- 2.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 각하게 저해하는 경우
- 3.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6조(지원대상 등) ① 시장은 정비 대상의 소유자가 정비대상을 철거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해 ②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당 정비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 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 에 한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1항의 지원 금액은 매년 수립 하는 지원계획에 따르며, 다른 사 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 립하는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 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제6조(빈집정비사업 시행) ① 시장 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 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 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 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

- **제7조(지원방법)** ① 제6조제1항의 **제7조(사업비 지원)**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 집
 - 2.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(공용 주차장, 쉼터, 운동시설, 공 용텃밭,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)

- 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 를 제출한 경우
- 3.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 음 각 호에 한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.
- 1.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 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2.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- 3. 민원발생 및 위해발생 대비 시급 한 경우
- 4.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효과가 큰 경우
-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기준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정비권고 및 직접정비) ① 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 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다.
 - 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목적 경우 그 정비대상을 직접 철거할 | 을 위반할 경우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시장은 정비대상의 소유자에게 정 비를 권고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다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여수시의 부 담으로 한다.
- 1. 정비대상의 철거
- 2. 정비대상 철거 후 그 부지를 2년 이상 공공용지(공공주차장, 문화여 가시설, 공용텃밭, 운동시설, 녹지 공간 등)로 제공. 다만 소유권이

이전되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<신 설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9조(준용)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 의 교부신청·절차·시기, 사용, 정 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한 빈집 정비 사업은 이 조례 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여수시 공고 제2019-2190호

공 고

「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6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규 적합성을 제고하고, 전라남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시 공공시설 할인 및 할인가맹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를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[조례]

- 제8조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제2항 인용 조문 수정
- "제8조의 규정에 의해" 를 "제9조에 따라" 로
- 제8조 및 제9조 중 "센터의 장"을 "센터장"으로 용어 통일
- 제9조(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)제1항제4호 용어 변경
 - "금치산자"를 "피성년후견인"으로, "한정치산자"를 "피한정후견인"으로 변경

[시행규칙]

- 제15조2(자원봉사자 사기진작)제2항 및 제4항 조문 수정
 - 전라남도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시 공공시설 할인 및 할인가맹점 제도 이용 반영
- 별지 제4의2호(자원봉사자증) 서식 개정
- 3. 개정안 : 별 첨
- **4. 입법 예고기간** : 2019. 9. 6. ~ 2019. 9. 26(21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 주소,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 -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장(사회복지과장)
 - 전 화: 061)659-3690, 팩스: 061)659-5820
 - 이메일(E-Mail) : angel6097@korea.kr
- 나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	「여수시	자원봉사활동	지원 조리	ᅨ 및	시행규칙」	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・규칙안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	
항목별 내용	찬성	반대	72(711)	기더 검포기정	

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단서 중 "제8조의 규정에 의해"를 "제9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센터의 장"을 "센터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센터의 장"을 "제9조에 따라 센터장"으로, "센터의 장을"을 "센터장을"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센터의 장"을 "센터장"으로, "때"를 "경우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아니한 자"를 "않은 경우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, "정지된 자"를 "정지된 경우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센터의 장의 임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"를 "센터장의 임기중 제1항에 따라"로, "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"를 "제7조제4호에 따라"로 한다.

4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	제8조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
①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	① <u>센터장</u>
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	
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며, 기타	,
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	
영주체인 법인이 공개경쟁의 방	
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	
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	2
임기만료 1월 전까지 선임하여야	
한다. 다만, 제8조의 규정에 의해	<u>제9조에 따라</u> <u>센터</u>
센터의 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	<u> 장</u>
임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센터의 장	<u>센터장</u>
을 선임하여야 한다.	
제9조(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)	제9조(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)
①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	① <u>센터장</u>
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	<u>경우</u>
임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	4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5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	5
되지 <u>아니한 자</u>	<u>않은 경우</u>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법률에	6
<u>의하여</u> 자격이 상실 또는 <u>정지</u>	<u>따라</u> 정지된_
<u>된 자</u>	<u>경우</u>

②센터의 장의 임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센터 장의 선임 또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두게 되는 사무국장이 센터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<u>센터장의</u>	임기중	제1항에	따라
		<u>제7조제</u>	4호에
따라			
		.	

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2제1항 중 "센터의 장"을 "센터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와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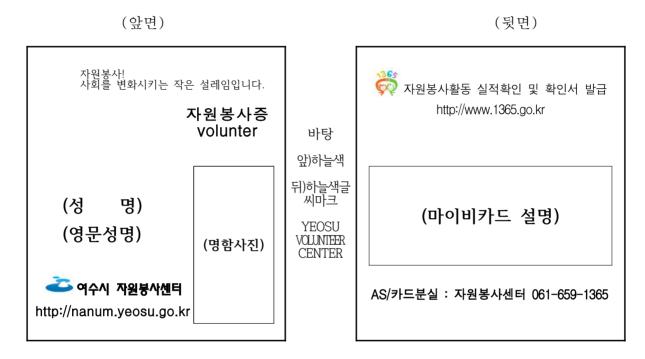
④ 시장은 전라남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와 자원 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 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별지 제4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원봉사자증(자원봉사전자카드)



규 격: 가로 8.5cm × 세로 5.4cm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2 (자원봉사자 사기진작)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 및 산업시찰, 현장체험, 세미나 참석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	제15조2(자원봉사자 사기긴작) ① <u>센터장</u>
②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 봉사실적(마일리지)에 따라 시에서 운영 하는 공공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	②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라남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 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와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시에서 운 영하는 공공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	④ 전라남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와

[여수시 공고 제2019 - 2192호]

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미평동 159-3번지 외 1필지(158번지)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미평동 158번지	18	1.2	24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9. 6

여 수 시 장